구분	인 가 조 건	이행사항	비고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순환 등 소관사항			
	o 사업부지 우수유역(A-1, A-5, A-6, A-7, A-8)의 우수를 기존 하수관로(관번호 1032-7000)에 연결하는 계획은 사업부지 하류 측 하수관로 통수능에 영향이 가중되므로 신설 하수암거(3.5×2.0m)에 연결 조치	이행완료	첨부21 하수암거 설치도면 / 시공사진
	o 소공원② 우·오수처리계획 수립 조치	이행완료	
	o 사업부지내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침투형 빗물받이 등 빗물침투시설 설치와 충분한 녹지 확보 조치	이행완료	
▣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문가 자문제 등 소관사항			
	o 하수암거 이설에 따른 효창원로62가길(효창동7-1 일대) 기존 주택의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하수관로 부설 조치	이행완료	목록 6-12 참조 GIS DB 공공측량 성과도 / 심사결과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등 소관사항 (준공시 반영)			
	o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되메우기 전 20m간격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취득하여 하수도 GIS DB(하수관망도, CCTV자료 등)를 서버 탑재 완료하고 준공 처리	이행완료	
▣ 유출지하수 등 소관사항 (착공시 반영)			
	o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사용개시 신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	해당없음	
	o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후 자치구에 봉인 요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서울시 하천관리과]			
	o 사업시행전 빗물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할 것.	이행완료	
	o 공원 및 녹지조성시 오목지형 처리로 부지내 우수가 최대한 지반내로 침투되도록 설계반영할 것.	이행완료	
[서울시 주택정책과]			
	o 임대주택 경합시 대상자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구역 거주 오래된 순으로 결정할 것.	이행완료	첨부22 임대주택 설치내역 / 시공사진
	o 임대주택 입주자격자가 타구역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향후 본구역 임대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타구역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	이행완료	
	o 비대책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자격을 부여할 것.	이행완료	
	o 기타 시설기준 - 건물내 시설물 설치기준은 우리시 SH공사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사전협의하고 발코니 및 복도 샷시 설치할 것.	이행완료	
[서울시 조경과]			
	o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용산구 효창동 13-54,57 필지 등 행정재산은 은행나무 마을마당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속하지 않아 관련 법규상 무상양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매입 후 사업시행하여야 할 사항임.	이행완료	첨부03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 토지조서

법무사 : 심 신 영
서울중구서소문로103(서소문동,백제빌딩9층914호)
전화: (02) 778-9055
FAX: (02) 778-9056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토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3-54외 5필지 토지 247.90㎡**
- 세부내역(별도 붙임) 11 (62-3)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매수자"이라 한다)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다음 각 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용산구 효창동 13-54외 5필지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일십억이천칠십사만원정(1,020,740,00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 일금**일억이백칠만사천원정(₩102,074,000원)을** 납부하고, 잔액 일금**구억일천팔백육십육만육천원정(₩918,666,000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도자"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 ①"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15일

위 매도자 서 울 특 별 시

위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박 원

위 매수자 용산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27437-0010988)

위 대표자 조 합 장 장 준 문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재산의 세부내역]

구 분	토지 재산의 표시				매 매 가 격(원)	비 고
	소 재 지	공부면적 (㎡)	매수면적 (㎡)	지 목		
1	용산구 효창동 13-54	16.50	11.50	대	47,352,000	
2	용산구 효창동 13-54		5.00	대	20,588,000	13-6
3	용산구 효창동 13-57	90.20	90.20	대	371,403,000	
4	용산구 효창동 17-3	10.90	10.90	도	44,881,000	48-1
5	용산구 효창동 43-4	123.00	117.70	도	484,635,000	
6	용산구 효창동 43-4		3.00	도	12,353,000	23-2
7	용산구 효창동 43-4		1.60	도	6,588,000	22-4
8	용산구 효창동 43-4		0.70	도	2,882,000	22-4
9	용산구 효창동 48-3	6.60	5.80	도	23,882,000	
10	용산구 효창동 48.3		0.80	도	3,294,000	48-1
11	용산구 효창동 62-3	0.70	0.70	도	2,882,000	60
합 계		247.90	247.90		1,020,740,000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